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130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75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68,438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이라 한다)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지하상가는 원고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D호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상가 부분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가 점포별로 전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지하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이 원고 명의로 부과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피고는 자신이 매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 원고 소유 D호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아서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소유 D호 관리비 명목으로 상계처리하여 임의로 착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06. 6.부터 2011. 9.까지 피고가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중 합계 103,768,438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상계처리하여 부당이득한 것이고, 원고는 위 전기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2021. 7.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3. 6.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지하상가 D호에서 볼링장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지하상가는 주식회사 E이 소유하면서 임대한 점포들과 원고가 운영하던 볼링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 원고 명의로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E 소유의 점포 세입자들로부터 전기요금, TV 수신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상하수도요금, 하자보수비, 운영비, 청소부 급료, 관리인 급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위 세입자들이

피고에게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항목의 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피고는 자신이 매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주식회사 E 소유 점포의 관리인이고, 원고 소유의 D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링장을 시작하자 자신이 상가관리인이라고 하며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가 지하상가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수천만원의 돈을 피고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가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된 원고가 세입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새로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D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친인척인 F 등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실제로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상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출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와 피고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세입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전기요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